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7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	3
【참고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및 설치 현황	4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①·② (생략)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 -----.
④·⑤ (생략)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 ----- ----- ----- <u>시·도의 교육청 소속으로</u> ----- ----- -----.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시·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후단 삭제>

1. ~ 8.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육아종합지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④ ~ ⑥ (생략)

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교육감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교육감은-----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③ (생 략)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
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
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
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
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
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
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
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
다.

③·④ (생 략)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확보) 교육감-----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
집의 설치) ① -----

-----교육감-----
--. -----

-.

② 교육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 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 ·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② -----교육감-----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교육감-----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6. (생략)

④ (생략)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

-교육감-----.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

-----.

1. -----

교육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생략)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1의2. (생략)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u>시·도지사가</u> 지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u>교육감</u>----- ----- -----. ② ----- ----- -----<u>교육감</u>-----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 <u>교육감이</u>----- ----- -----
---	---

③·④ (생 략)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생 략)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교육감-----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육감-----.

④ 교육감-----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교육감-----
-----.

⑦ (현행과 같음)

⑧ -----

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생략)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교육감-----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34조의5(조사·질문)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건강

④ 교육감-----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조사·질문) ① -----
-----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② -----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

---교육감이-----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

-교육감-----.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②·③ (생 략)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
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
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
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
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
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
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
부장관 또는 교육감-----

--.

1. ~ 8.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교육감-----

---.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교육감--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

② 교육감-----

-----.

③ 교육감-----

-----.

④ 교육감-----

-----.

⑤ 교육감-----

-----.

⑥ 교육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생 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
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
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
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
· 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
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
육부장관 및 교육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

④ 교육감-----

-----.

⑤ 교육감-----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교육부장관

및 교육감_____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

-----.

-----교육감-----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

-----교
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

-----.

야 한다.

1. ~ 5. (생략)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권한의 위임) -----
교육부장관-----

교육감-----.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교육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의 어린이집) ① 교육감-----

-----거쳐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교육부장관 또
는 교육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 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보통합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및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¹⁾ 등을 추진 중에 있음.

1)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
-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교육청(유치원)과 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방 관리체제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른 통합기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에 규정된 영유아 보육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계획의 수립, 어린이집의 설치·폐지·휴원명령, 어린이집 시설(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이행강제금·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사무와 같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제도의 관리·운영 사무는 주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개정하고 있음.

□ 사무수행의 주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개정한 조항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5조의2(놀이터의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제2항·제4항 제공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9조(청문),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6조(과태료)

이는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유치원과 같이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시·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²⁾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의 경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교육감이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거나(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교육청 등), 교육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병기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강원교육청)이 있음.

2)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일부 사무의 경우에는 사무수행의 주체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두거나, 현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교육감이 함께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사무수행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현행법) 제4조(책임) 제2항 ※ 보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3항 ※ 제공기관 비용 보조, 제34조(무상보육) ※ 무상보육 비용 보조, 제34조의2(양육수당) ※ 양육수당 지원,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용 보조,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국공립어린이집 무상대부 및 사용,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 사무수행의 주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과 교육감이 함께하도록 개정한 조항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34조의5(조사·질문),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사무의 수행 주체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둔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에서도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포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4조(책임) 및 제34조(무상보육)³⁾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⁴⁾」은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를 건

3)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명시하고, 제24조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 제34조의2(양육수당)⁵⁾과 관련하여서는 가정양육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신청·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수행함으로써 보호자의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으로의 이관 사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추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4)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5)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

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 제15조제1호에서도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의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의 이관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외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에 교육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주체를 이원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⁶⁾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기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100%),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17개소(51.3%)가 운영 중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보조사업으로 국고지원(국고보조율 50%)을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참고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및 설치 현황>

개정안 제7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교육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제2항), 교육감, 시·도지사

6)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자료: 교육부) >

구분	주요사업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육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부모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양육정보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화 사업	가정양육, 저출산대책관련된 지역 특화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제3항), 교육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에 업무를 위탁할 수 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지방육아종합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주체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육아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재정, 보육수요 등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추가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혹은 위탁의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평생교육법」 제21조⁷⁾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의 경우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설치·운영 주체를 이원화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7조는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육으로만 한정된 측면이 있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 책임 소재 불명확, 현장의 혼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

7)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황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대구시, 경상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소관의 어린이집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지속 수행할지 불확실하고 업무 중복으로 현장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교육청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전체 사무·인력·재정을 교육감 소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경남교육청)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에 남겨두되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자는 의견(경기교육청),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주체를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전북교육청) 등이 있음.

교육부는 법률에서 다양한 운영 형태를 제시하고, 법률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며, 아울러 양육사무는 주민과 근접한 거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설치·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셋째, 개정안은 부칙 제3조8)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므로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두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신축, 매입, 공동주택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39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8) 부 칙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교육감과 체결한 사용계약으로 본다.

9)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용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시·도교육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세종·충북·전남교육청)이고,

시·도 및 시·군·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 공유재산이므로 교육청과 임대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 서초·송파구)과 무상임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강원도) 등을 제시함.

교육부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설치된 비율이 61%임을 감안하여, 현재 공간 사용형태를 보장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대부·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교육감이

-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임.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개정안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안과 같이 개정되면,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의에 따라 교육감으로 일원화 할 수도 있고, 현재의 지자체 설치·운영 형태를 유지하되, 필요 시 교육청이 사업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함 * '24. 7월 현재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육아종합 설치 비율 51.3%, 위탁 운영 비율 94.5% □ 개정안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 사무 이관에 따라 어린이집 사무의 주체는 교육감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집 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주체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필요 시 단서로 지자체 협조에 관한 사항 추가 검토 * 유치원 설립 의무에 대한 「유아교육법」 사례도 참고할 필요(제9조의2) 교육감은 개발·정비 구역 등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 설립해야 함) □ 부칙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설치된 비율이 61% 임을 감안, 현재 공간 사용형태를 보장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공용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취지를 반영할 필요. 이에, 교육감이 운영하려는 기간 중에는 교육감에게 무상 사용허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조문 수정 ○ 다만, 사용허가 기간 중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관련 물품의 사용 방안은 법 통과 이후 지침 등으로 안내할 사항
시·도교육청	□ 개정안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감 소관의 어린이집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위탁 받아 지속 수행할지 불확실하고 업무 중복으로 현장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주체 일원화 필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교육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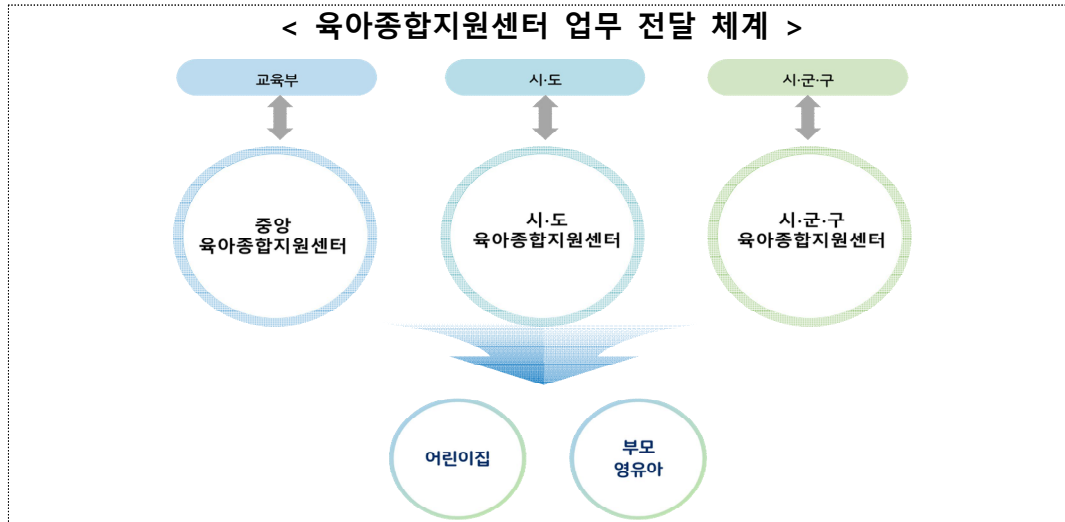
관계기관	의견
	○ 육아종 관련 전체 사무인력·재정을 교육감 소관으로 일원화(경남교육청) ○ 현재 지자체의 관할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에 남겨두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경기교육청)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주체를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으로 일원화(전북교육청)
	□ 개정안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의 경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교육감이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를 명시 필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교육청 등) ○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병기 필요(강원교육청)
	□ 부칙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명시(세종·충북·전남교육청) ○ 국공립어린이집이 소유한 물품 이관 방안이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시·군·구와의 물품 처분에 관한 이견 발생 우려(인천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 개정안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대상 아동을 지원이 주된 업무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일관성있게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대구시, 경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 부칙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 공유재산이므로, 교육청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후 사용 필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 서초·송파구) ○ 시장·군수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도교육감 이관시 관할 어린이집 무상임차 규정을 마련(강원도) ○ 지자체가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수정 필요(전북 전주시)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주택과 지자체 간 무상 사용권에 대한 설치협약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및 기부의 대상이 미해당(대구시) ○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속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이 발생하므로 시설물 관리 주체 일원화 필요(인천시)

관계기관	의견
유관기관 및 단체	□ 개정안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지방육아종의 설치·운영 주체를 교육청과 지자체 두 곳으로 관리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재정지원을 받는 지자체에 남겨두고 필요 시 교육청에서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및 설치 현황

- ▷ 중앙센터-지역센터는 명시적인 상하관계는 아니나,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조임



- ▷ **(중앙센터)** 공통 교육 개발, 양육상담, 지방센터 총괄 관리 등 수행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22.6 ~)
 - **(센터운영 지원)** 신규개소 센터 지원, 전국 센터 현황관리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작배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센터 직원교육 운영)** 전국 센터 직원 대상 직무교육 자료 제작,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 직급별 맞춤형 교육(16회)으로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센터 자체평가 관리)** 자체평가 전환에 따른 평가체계 및 지표 개정으로 센터 운영 내실화 도모
 - **(유보통합 대응)** 유보통합 대비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및 개편 방안 연구 진행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지원

- ▷ **(지방센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 수행 등 **실제적 사업 수행 주체**

구분	주요사업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육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부모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양육정보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화 사업	가정양육, 저출산대책관련된 지역 특화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 ▷ **(예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국비 100%)**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자료: 교육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총 136개소) >

(2024. 7.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 (A)	시군구수 (B)	설치율 (A/B)
계	136	1	18	117	228	51.3%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1	-	1	11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사하구	16	68.7%
대구	4	-	1	3 동구, 수성구, 달성군	8	37.5%
인천	7	-	1	6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10	60.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	-	-
경기	33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 북부		-	1	9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10	90.0%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6	-	1	6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14	42.8%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3	26.1%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자료: 교육부